

『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3년 5월 30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3년 5월 31일

라. 상정일자 : 2013년 6월 10일

제17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유 영 명

나. 제안이유

- 안전행정부의 자치법규 제정 권고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며 공정하고 투명한 후생복지제도 운영으로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적용범위(안 제4조)
 - 구미시 소속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니나 구미시에 근무중인 사람 중 공무원후생복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람
-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(안 제6조)
 -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
- 복지점수의 부여기준(안 제10조)
 - 기본복지점수, 변동복지점수(근무년수, 가족사항 등 고려)

○ 후생복지사업의 시행(안 제15조)

-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.

○ 후생복지운영위원회(안 제17조)

-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미시 공무원후생복지 운영위원회를 두어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심의·조정함.

라. 참고사항

○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대 회

○ 본 조례안은

- 안전행정부의 자치법규 제정 권고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며 공정하고 투명한 후생복지제도 운영으로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

○ 주요 내용으로는

- 안 제4조에서 조례의 적용범위를, 안 제7조·제8조에서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을, 안 제10조에서는 복지 점수의 부여기준을, 안 제15조에서는 후생복지사업 시행을, 안 제17조에서는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
안전행정부의 자치법규 제정 권고에 따라 구미시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구미시 공무원들의 복지수요 충족으로 시민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보다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제정한 것으로서,

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